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따른 법학전문도서관 소고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 장 현¹⁾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사서
kimjanh@kangwon.ac.kr

I.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Law School)이란 미국대학의 법학교육 제도에서 유래한 3년제 법과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처음 시작한 대학은 하버드대학이다. 이 제도는 1870년 C. C. 랭델²⁾이 법과대 학장에 취임한 이래 법학교육의 개혁을 위해 실험적으로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미국대학의 지배적인 법학교육제도로 정착된 것은 1920-3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1)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2) Christopher.C. Langdell은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25년간이나 케이스방식(case method), 또는 소크라테스적 문답식(Socratic method)을 제시하며 일종의 문답식 법학교육방식을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에 법적 사고방식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시도한 인물이다.

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들의 졸업을 사법시험의 응시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화가 정착된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J.D.(Juris Doctor)와 LL.M.(Master of Law), 그리고 J.S.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 등 세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3년간 교육한다. 미국에서는 LL.M.과 J.S.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LL.M.은 1년 과정으로서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수료자에게는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J.S.D.는 법학박사 학위과정이다. 우리나라의 박사학위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 교수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학위보다 J.D. 학위만 소지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들은 법학박사 학위보다 법률 실무경험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과정을 운영하는 미국의 로스쿨은 한마디로 3년제 전문대학원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교육제도와 내용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전문화도 일찍이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료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법학분야에서 도서관의 독립적 전문화가 그것이다. 로스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학도서관의 전문화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II.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의 경우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008년부터 한국에서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하에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국내의 각 대학 법과대학은 로스쿨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서도 강원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학전문도서관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는 “법조인으로서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추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 아래 전문화된 법학지식과 창조적 지성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화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및 건학이념인 실사구시를 반영하여 지식, 기술, 윤리, 사명감, 국제

화 및 환경의식을 최선을 다해 실현하는 「5+1 BEST」³⁾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키워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5+1 BEST」법조인이란, ① 전문화된 법학지식을 갖춘 법조인, ② 실무적 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조인, ③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 ④ 국가·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춘 법조인, ⑤ 국제화된 법조인, ⑥ 환경분야 법률전문가를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목표 수립에는 환경분야 중점육성 등 강원대학교 발전계획, 무변촌⁴⁾ 해소등 사법서비스의 제고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교육을 통한 법조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에 당면한 강원도의 교육·법률 수요가 반영된 것이다. 이의 실현체계는 정규과정 및 비정규과정을 포함한 목표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 충분한 시설과 장학금의 확보 등 교육환경, 지역사회와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행정조직 등 추진체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노하우(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아 운영중임) 등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⁵⁾.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1단계로 최적의 설립요건을 확보하며(2009년), 2단계로 100% 변호사 합격체제를 구축하며(2011년), 3단계로 세계적 명문으로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2013년) 등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위원회, 본부직속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목표의 적절성과 달성체계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교육의 질 등에 대하여 주기적 평가를 실행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주기적 평가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적 보장 및 담보를 위해 학칙에 근거하여 발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교육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 이론에 대한 이해와 법조실무에 대한 기초교육은 1학년에 집중하여 교수함.
- 2) 기술: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로어링, 엑스텐션 등 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법조실무교수가 팀티칭 등의 교수방법으로 담당하게 하고, 변호사회, 검찰청, 법원에서의 실무수습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
- 3) 윤리: 법조윤리 과목을 필수로 하되, 저명 법조인을 초빙한 특강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입학전형시 인성, 졸업시 법조윤리에 대한 결의 서약 행사 등 개최
- 4) 사명감: 12개 시군이 무변촌인 강원도 현실, 농어촌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배우자의 혼인, 이혼, 교육 문제 등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지역에 대한 봉사의 필요성 강화 교육

3) Best는 교육목표로는 “최고”의 의미를, 실천전략으로는 “최선”의 의미를 가지며, 5+1은 지식, 기술, 윤리, 사명감, 국제화 그리고 환경의식을 의미한다.

4) 무변촌(無邊村)이란 그 지역에 변호사가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무변촌 시·군이 무려 12개나 된다.

5)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

5) 국제화: 일본의 큐슈대학, 독일의 쾰른대학, 홍콩중문대학교와의 학술교류 협정을 지속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인디애나대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대학 외에 동남아시아 여러 대학교와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교환교수제, 교환학생제도 등을 통해 국제화 감각을 키움.

2. 특성화 목표

아래의 <표 1>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법무(서울대, 고려대), 국제통상(동아대), 부동산(건국대), IT산업(경북대), 글로벌 기업(경희대), 의료생명(이화여대, 원광대), 등 국제통상과 법무를 중심으로 저마다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로스쿨 인가대학 특성화 분야

학 교 명	특 성 화 분 야
강원대학교	환경
건국대학교	부동산
경북대학교	IT산업
경희대학교	글로벌기업 / 법무
고려대학교	국제법무
동아대학교	국제통상
부산대학교	해양선박 / 금융 / 국제통상
서강대학교	기업법 / 금융
서울대학교	국제법무 / 공익인권 / 기업금융
서울시립대	조세법
성균관대학교	기업법무 / 인수합병
아주대학교	기업법무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 / 국제비즈니스 / 의료
영남대학교	인권 / 공익
원광대학교	의생명과학법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 / 젠더
인하대학교	물류 / 지적재산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
제주대학교	국제법무
중앙대학교	문화예술
충남대학교	지적재산권 / 특허
충북대학교	과학기술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법
한양대학교	국제소송 / 지식문화 / 공익소수자인권

그 가운데서 강원대학교의 특성화 전략 프로그램은 환경분야이다.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환경법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법 우수이수자 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환경법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환경법 센터를 설립하여 환경공학과 등 관련 학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백두대간 등 지역환경의 보호, 지역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관련 간행물, DB의 구축, 환경법 저널 등의 발간을 추진하여 환경법 연구의 허브도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특성화 계획의 실천 여부를 평가하고 사후 교정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성화 전략이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교는 평가 및 교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 환경분야를 제시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 제기과 이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필요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 자연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원도의 지역사회적 여건,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등 다수의 환경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강원대학교의 교육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환경분야 특성화의 근거

	환경분야 특성화의 근거	구체적 내용
1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	· 환경오염 및 훼손,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 필요성 · 환경문제에 적극적·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법 전문기의 공급 부족과 수요증대 · 환경 분야 법률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2	지역사회의 여건 및 특성	·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서의 강원도 ·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하는 강원도 · 환경법 특성화를 통하여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하라는 기대
3	강원대학교의 교육여건 및 특수성	·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등 다수의 환경관련학과 설치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 · 각 환경 분야의 전문적 특화 및 환경연구소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 환경 관련 교육여건확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환경법 분야를 특성화

이와 같이 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환경법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분야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Ⅲ. 법학전문도서관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한 바 있다. 이때부터 국내 각 대학의 법과대학은 저마다 로스쿨 설립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가운데 중점 사업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법학전문도서관의 설립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도 “법학전문대학

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강의실, 교원연구실,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과 함께 법학 전문도서관의 설치를 필수화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실제로부터 진리를 탐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Veritas ex Prave)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실재를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며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교육목적을 수립, 개교이후 60년 동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법과대학은 1970년 설립 이래로 교훈인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법학의 이론과 그 응용 및 인접 사회과학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법률직에 필요한 기초적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1. 하드웨어의 구축

강원대학교는 200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다. 지난 1월 로스쿨 선정 1차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스쿨 예비인가를 획득한 강원대학교는 예정된 2차 실사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로스쿨 최종 유치와 우수한 법학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수 신규 채용 및 관련 교육·연구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준비활동을 해 왔다.

이번에 신축되는 법학전문도서관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과 법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 교육시설로 그 동안 강원대학교는 법학전문도서관 건립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쳐 현재 법과대학 뒤편에 부지를 마련하고 이번에 신축 기공식을 하게 됐다.

현재 3,284.85㎡의 규모로 건축 중인 법학전문도서관은 최대 15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서고를 갖출 예정으로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서고 및 자료열람실, 자료·정보검색실, 정기간행물실을, 2층에는 서고 및 참고자료실을, 3층에는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강의실을, 4층에는 컴퓨터랩실과 다목적회의실을, 5층에는 교수연구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열람석은 총 260석으로 자유열람실 180석과 자료열람실 80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완벽한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로서 훌륭한 모의법정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모의법정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으로 서로 가변적으로 변환, 활용할 수 있고 배심재판도 고려하였으며, 모의법정 총면적은 187.9㎡로 방청석수는 66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시설은 46석의 컴퓨터랩실과 28석의 멀티미디어실이 들어선다.

2. 소프트웨어의 완비

1) 장서분야

① 필요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법학 특성화 분야는 환경이다. 환경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교가 현재 실행해 온 학교 발전계획의 중점 육성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본교는 환경법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 청정 자연을 가진 강원도의 특성, 공과대학·산림환경과학대학·동물생명과학대학 등 단과대학 내에 다양한 환경관련학과, 환경연구소를 보유한 강원대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② 목표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분야의 도서 구성을 위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현재 법학분관에 18,706권, 법학전문도서관에 20,423권, 특성화 도서 12,132권, 교양도서 1,000권 등 총 52,261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2008년에 5,100권을 확보예정으로서 있으며, 향후 3년동안 15,300권을 구입·비치할 예정이다.

③ 장서의 특성화

전문도서관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특징은 보유장서의 수가 아니라 장서보유의 특성화에 달려 있다. 특히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 분야의 특성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도서관 또한 국내 유일의, 그리고 최대의 환경법 전문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교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는 현재 12,000여권에 불과하지만(표 3 참조) 향후 50만권 이상의 환경 및 환경법 관련 장서보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표 3〉 환경분야 도서보유 현황

구분	단행본	연속 간행물	참고 도서	일반논문		석사학 위논문	박사학 위논문	비도서	합계	총계
				일반논문	학회지					
국내서	3,754	250	471	1,557	390	2,296	412	163	9,293	12,132
국외서	1,303	1,220	240	40	14		22		2,839	
합계	5,057	1,470	711	1,597	404	2,296	434	163	12,132	

④ 학술지 및 Web-DB 확보

본교의 법학도서관은 현재 교수의 연구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위하여 외국학술지 20종과 국내잡지 42종, 학회지 5종, 전자저널 36종, 특성화분야 13종의 저널을 구독 중에 있으며, 4종의 법학분야 Web-DB와 특성화분야(환경)의 e-journal과 Web-DB를 확보하고 있다.

◎ 법학분야 Web-DB

- LAWnB : 국내 법학 관련 법령, 판례, 저서 및 논문 및 일본 판례 등 검색
- WestLaw : 미국 주, 연방의 판례 및 법령 등 모든 법률자료와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보고서 등과 유럽,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등의 법률자료 검색

- Beck-Online : 독일법률, 판례, 주석서, 핸드북, 백과사전, 법률잡지 등을 포함한 법률 자료와 Fach-News를 Full-Text로 검색
- D1-Law : 일본의 현행 법규, 판례체계, 법률판례문헌정보, 법학 관련 법령, 저서 및 논문 검색

◎ 특성화분야(환경) e-journal 과 Web-DB

- Blackwell : 800여종 저널의 원문
- CSA BioOne 1 : 68개 학회 86종 저널의 원문
- IWA Publishing : 환경, 위생공학 등 수자원 관련분야 7종 저널의 원문
- JSTOR : 인문 사회, 경영, 생물학분야/ 주요 핵심저널의 아카이브에 대한 원문 제공
- Sage Publication : SAGE사의 480 여종 저널에 대한 원문
- Science Direct : Elsevier에서 출판하는 저널 2,300 여종의 원문
- Springer + OJA : Springer-verlag사(Kluwer포함)의 1,500 여종 저널에 대한 원문
- CSA Illumina Full Collection : CSA(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사에서 제공하는 색인, 초록DB로 5종의 Collection으로 구성
 - * CSA Materials Science Research Collection
 - * CSA High Technology Research Database Collection
 - * CSA Engineering Research Database Collection
 - * CSA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Collection
 - * CSA Life Science, Aquatic Sciences and Environmental Science Collection
- ProQuest ARL : 학술 전 분야(비즈니스와 경제, 교육학, 언어학, 컴퓨터/통신, 기초과 학, 응용과학, 정치학, 엔지니어, 예술, 사회과학, 과학, 의류, 식품, 에너지, 법률등)에 걸쳐 색인, 초록 5,000 여종 및 저널의 원문 3,700 여 종 제공

또한 향후에는 세계유수의 LexisNexis, Lexis-Nexis JP, Westlaw JP, Jurifrance 등의 DB들도 구독할 예정이다.

2) 전문인력확보

이용자 중심의 법학전문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One-stop서비스로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 하고, 법학전문도서관의 국제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1급 정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한 사서를 채용하여 동아시아의 법학전문도서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법학전문도서관 발전,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정보 공유기반 구축, 도서교환을 통한 장서량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에는 법학영역의 자료를 선정·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서지업무도 담당하는 법학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법학전문사서 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 외에도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여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콘

텐츠를 구축하여 이용 서비스를 한층 강화·활성화할 예정이다.

IV. 법학전문도서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하버드 로스쿨은 개교와 동시에 완전한 법학도서관(a complete law library)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것은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교육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법학교수확보나 장학제도 경쟁에만 열을 올릴 뿐 하버드 로스쿨처럼 완벽한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를 그 핵심으로 천명한 대학을 발견할 수 없다.

R. 데시데리오(R.G. Desiderio)는 “법학도서관이 없으면 법률제도가 운용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A. 필링(A.C. Pulling)도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만 가능하며, 그 여건 가운데 도서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학도서관을 ‘교과과정을 위한 중추’, ‘법학교육을 위한 정보원’, ‘교수와 학생을 위한 작업장’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⁶⁾. 물론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은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을 법률정보의 센터이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훈련장이며 법학교육의 최전방으로서 인식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강원대학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모의법정의 설치를 우선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2. 독립성 확보

현재와 같이 국내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의 부수적 설치만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의 능동적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속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분관으로서의 예산, 인력,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독립성의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로스쿨을 비롯한 미국의 로스쿨들처럼 법학전문도서관의 명실상부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체제상의 독립

기구의 독립이란 시스템의 독립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법률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AALL)는 1936년 법학도서관이 일반도서관으로부터

6) Arthur C. Pulling, 1950, “The Harvard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43(1): 1.

행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ABA도 이미 1959년 자치기구로서 법학도서관을 인정했다⁷⁾. 이것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일찍이 설립하여 운영해 온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이미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서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기구의 전문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경험의 결과일 것이다.

AALL은 높은 수준의 봉사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A 예산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의 자치제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으므로 로스쿨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받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단계에 있는 한국의 사정으로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한국의 법학전문도서관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나 다름없다.

2) 독립협의체 구성

AALL이 창설된 것은 1906년이다. 이것은 미국의 법학도서관의 역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법학도서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AALL은 창설 이래 법학도서관의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법학전문도서관들에게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델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일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정부, 또는 사학재단에 의한 간섭과 통제, 운영의 개입과 관장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율성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들의 자율적인 독립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V. 마치며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건은 양질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에만 달려 있지 않다. 어느 분야이건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배후 지원환경의 완비이다.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도서관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외부에 보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법조인들이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외적으로 훌륭한 법학전문도서관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섭렵하여 전문적이고 창의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교육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도서관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불가분의 한 컬레가 되어야 한다.

법학도서관이 없으면 법률제도의 운용도 불가능하다는 데시데리오의 주장처럼 법학전문 도서관

7) J.L. Mullins, 'A Selected Factors Affecting Growth Rates in American Law Libraries, 1932-1976', p. 5, 홍명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p.357. 재인용.

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어떠한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 및 이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과목과 유형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법학전문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로스쿨의 지식정보 인프라를 책임지게 될 법학도서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학전문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이념과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끔 독립적 기구로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질적 및 양적으로 우수한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버드 로스쿨이 선언한 완전한 법학도서관으로의 방향 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급히 촉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다양하고 완벽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으로서, 그리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법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㉞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2008.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일보』, 2007. 무변춘 시·군 12개, 법조혜택 늘려야, 8월 28일.
 건국대학교 법학대학, 2007. 『제1회 전국 법학도서관 연합세미나 자료집』, 2007년 10월 5일. [서울: 건국대학교].
 김원주, 2005.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위한 하나의 제언. 『고시연구』, 371: 12-13.
 『성대신문』, 2008. 로스쿨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3월 10일.
 정형진, 2005. 한국로스쿨의 모습. 『법학논고』, 22: 316.
 홍명자, 200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45-373.
 Pulling, Arthur C. 1950. "The Harvard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43(1): 1.